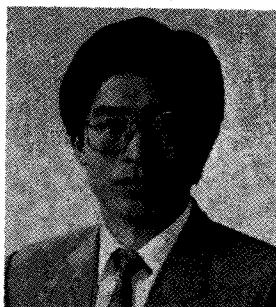


중국특허청의 최근동향과 특허 경쟁력 분석(1)



金 元 俊
(특허청 통신과장)

목 차

1. 서론
2. 중국특허청의 동향
3.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4. 자료 및 전산화
5. 특허권의 보호정책
6. 92년 9월 개정 특허법의 주요내용
7. 국제협력
8. 중국을 둘러싼 주변국가들의
특허경쟁력 분석
9. 결론

〈고딕은 이번호, 명조는 다음호〉

1. 서 론

중국은 1985. 4. 1에 특허제도를 처음으로 시행한후 짧은 기간동안 특허법개정, 우수한 인력확보 및 전산화의 성공에 힘입어 공산주의 국가중에서는 가장 현대화된 특허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1977년에 개편된 한국 특허청보다 8년 늦게 창설된 중국전리국(이하 “중국특허청”이라 한다)이 성공적인 독립기관으로 발전할 수 있었던 배경은 무엇보다도 “개방과 개혁”의 정책추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즉, 중국지도자들의 특허제도에 대한 새로운 사고와 특허청의 현대화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더 나아가서는 WIPO, EPO 등의 서방 선진국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발전의 원동력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중국은 우리의 이웃나라 중에서 새로운 경쟁국으로 떠오르고 있고 최근에는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1991년도 중국 특허청의 연보를 분석해 보면

우리나라는 중국에 출원한 10대 다출원 국가중에서 특허출원은 9위이고 상표 출원은 7위를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국민들의 중국의 산업체산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고 기업의 중국 진출도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중국 특허청의 최근 동향과 1992년의 개정법 및 특허권의 보호정책 등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2. 중국특허청의 동향

1) 설립경위

1949. 7. 28. 상표등록에 관한 임시규정(최초의 중국 상표법)

1963. 4. 12. 상표등록 관리 규정(1차 개정)

1980. 1. 중국 특허청 창설; 특허제도의 도입 준비

1983. 3. 1. 중국 상표법 시행(현행법)

1984. 3. 12. 제6기 전국인민대회 제4차 상

무위원회에서 중국 전리법(이하 “특허법”이라함)을 공포

1985. 4. 1 중국 특허법 시행

1988. 10. 26 한국인 특허, 상표출원 허용

1991. 10. 18~28 특허에 관한 전국학술 대회 개최(10개년 계획 수립)

1992. 9. 4 제7기 전국인민대표회의 제27 차 상무위원회에서 특허법 개정

1993. 9. 1 PCT 국제 조사기관(예비심사 기관) 지정 (PCT가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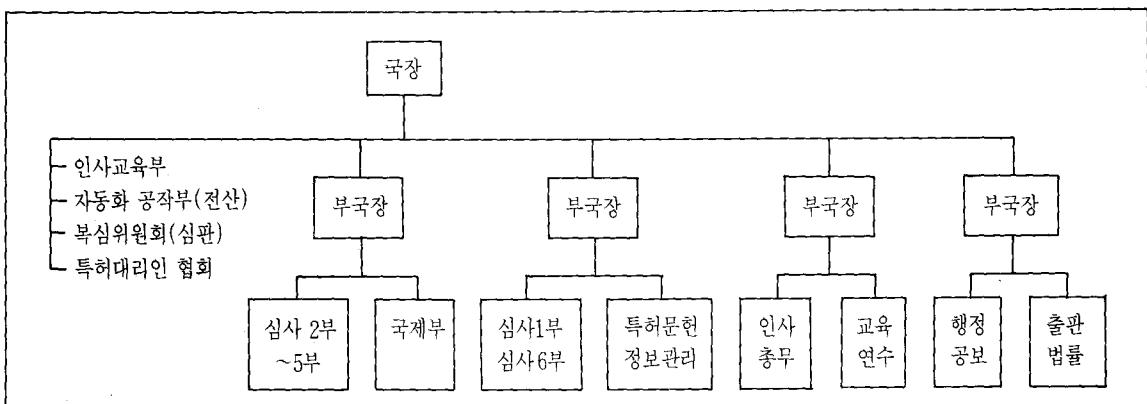
2) 조직

중국 특허청은 과학기술위원회 산하에 있고 아래 <그림 1>과 같은 조직의 전리국을 의미한다. 그러나 상표청은 별도로 국가공상 행정 관리국 산하에 있다. 북경에 있는 특허청의 본부는 18개 기능부서와 9개의 하급기관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해, 난경, 성도 및 기타 도시에 6개의 지청을 두고 있다.

3) 직원

1991. 12월말 현재 특허청 직원은 약 1,300명이고, 심사관 수는 약 450명 정도이다. 중국 특허청은 1985년 특허법 발효를 앞두고 1980년부터 특허청을 미리 개설하여 전국에서 심사관과 변리사를 공개로 선발 임용한 뒤에

<그림 1> 중국 특허청의 조직(북경 중국 전리국)



미국, 영국, 서독, EPO 및 일본 특허청 등에 2~3년간 장기 해외 훈련을 실시하였다. 또한 북경대, 상해대 등 여러 대학에서 특허법 강좌를 설강하여 특허업무에 필요한 수준 높은 심사관 및 변리사를 양성하고 있다.

4) 특허 및 상표의 외국인 대리기관

중국 전국에 474개의 특허대리기구(변리사 수 약 5,000명) 있어서 특허출원 및 특허권을 관리하고 있다. 외국인이 특허를 중국에 출원하고자 할 경우에 중국 국무원 승인을 받은 기관인, 과학기술위원회가 지정하는 다음 4개의 대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 중국국제 무역촉진위원회(CCPIT) 전리 대리부(북경), CCPIT 상해전리 상표 사무소

- 영신 전리 상표 대리 유한공사, 중국 전리 대리 유한공사(홍콩)

또한 외국인이 상표를 중국에 출원할 경우에는 국가 공상 행정관리국이 지정하는 2개의 대리기관을 통하여야 한다.

- CCPIT 상표대리부(북경) 또는 중국 상표 사무소(북경)

5) 독립청사완공

중국특허청은 1984년부터 5년간의 공사 끝에 1989년 5월에 단독청사를 완공하고 1989.

6월에 입주하였다. 이로인하여 지방의 6개 지청의 청사와도 전산망과 통신망인 LAN(Local Area Network)으로 연계하여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 청사 연면적 : 6,000 평 ($19,098m^2$)

 심사국 : 1,640 평

 특허문현센타 : 1,020 평

 전산부 : 380 평

 기타 : 2,960 평

- 일반인을 위한 대민 서비스 시설을 구축
(예 : 써치, 번역 등)

6) 교육훈련

중국 특허청은 1980년부터 심사관과 변리사의 교육 및 훈련에 의욕적으로 많은 예산을 투자했었다. 지난 1989년부터 특허심사, Microcomputer 및 외국어 등 10개 훈련과정을 신설하여 직원들을 연수시키고, 기술분야의 심사관은 공장 및 과학연구소 등에 파견하여 현장교육도 실시하면서 학술세미나, 국제 세미나 및 국내외 기술관련 전시회 등에도 파견 시켜서 새로운 지식을 얻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1989년에는 23명의 외국인 전문가가 특허청을 방문하여 강의 및 기술지도를 해준바 있고, 매년 약 50명의 직원들을 해외에 파견 시켜서 국제적인 감각을 익히도록 배려하고 있다.

3.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1) 특허출원 현황

1991년에 중국 특허청은 총 50,040건의 특허출원을 받았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21% 정도 증가된 숫자이다. 이에 대한 권리, 국내·외국인별 현황은 다음 <그림 2>와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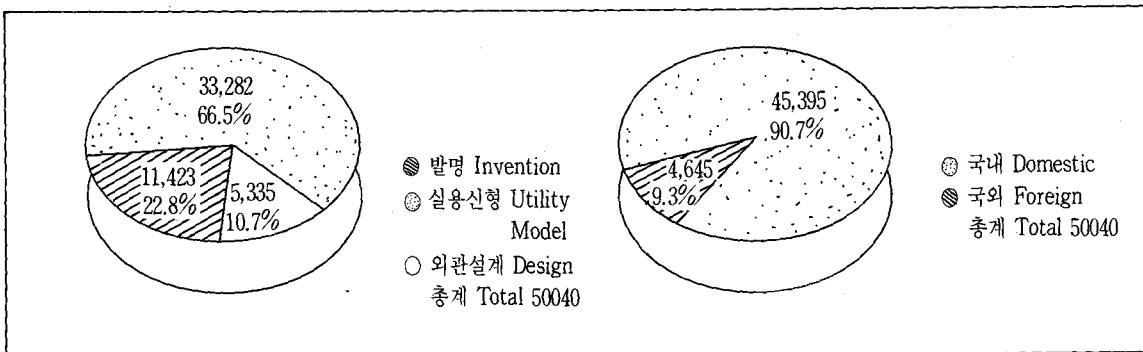
1985. 4. 1부터 1991. 12. 31까지 총 217, 373건이 출원되었으며, 이중 발명(특허)이 65,497건, 실용신행(실용신안)이 135,577건, 외관설계(의장)이 16,309건이었다. 1986부터 1991까지 특허출원 동향은 아래 <표 1>과 같다.

참고로 중국과 한국의 출원동향을 비교해 보기 위해서 1987년부터 1991년까지의 한국 특허청에 출원된 산업체산권의 동향을 아래 <표 2>와 같이 분석하여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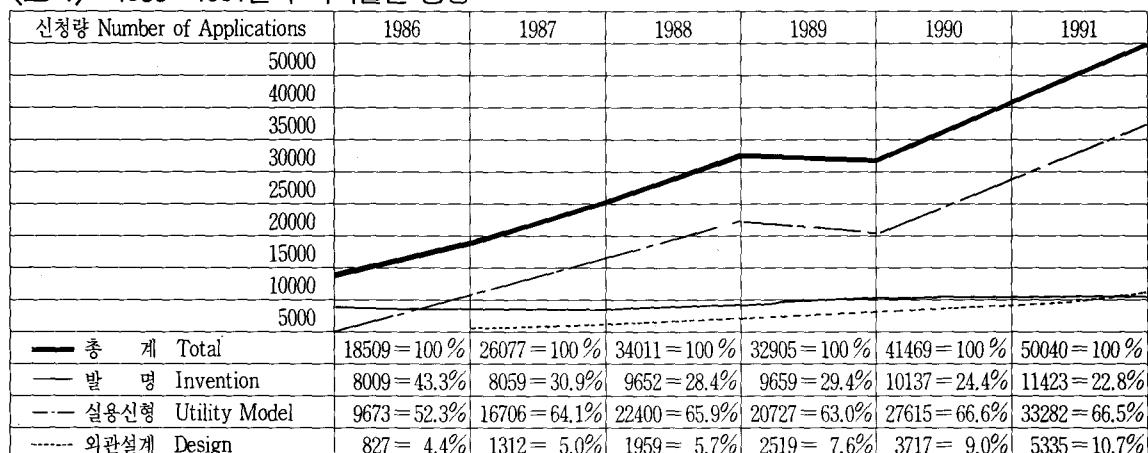
1991년에 중국특허청에 출원된 특허부문의 외국출원 10대 국가는 다음 <표 3>과 같고, 한국은 화란에 이어서 9위를 한 바 있다.

1991년에 출원된 특허의 기술내용을 IPC 분류에 의해서 분석해 보면 <표 4>와 같다. 여기에서 중국은 농업, 운수 및 기계분야에 대한 출원이 많고 전자, 화학 등의 분야의 출원은 적음을 알 수 있겠다. 그리고 내국인은 주로 기술수준이 낮은 실용신안에 출원을 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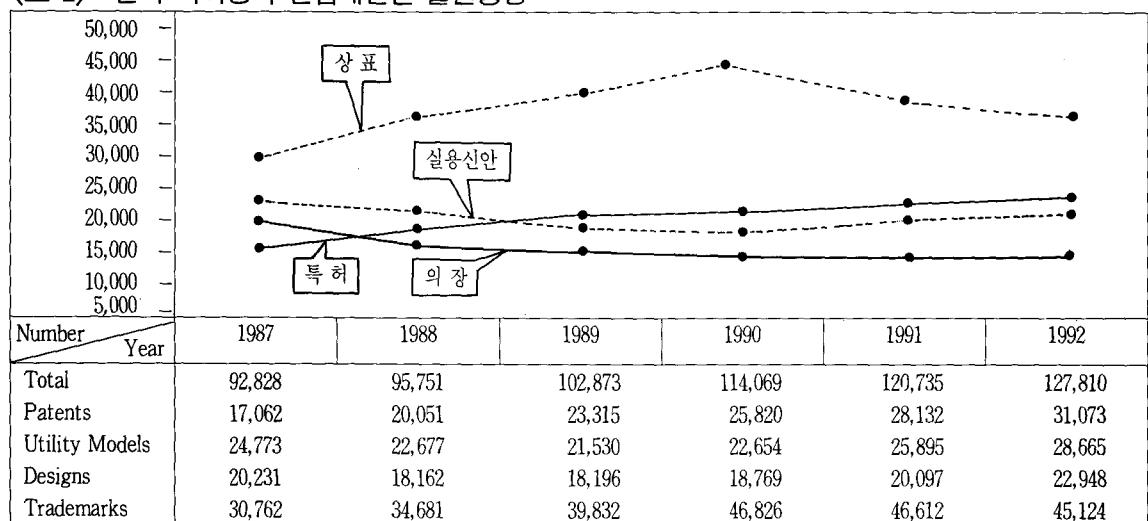
<그림 2> 1991년 특허출원의 권리별, 국내외별 현황



〈표 1〉 1986~1991년의 특허출원 동향



〈표 2〉 한국 특허청의 산업체산권 출원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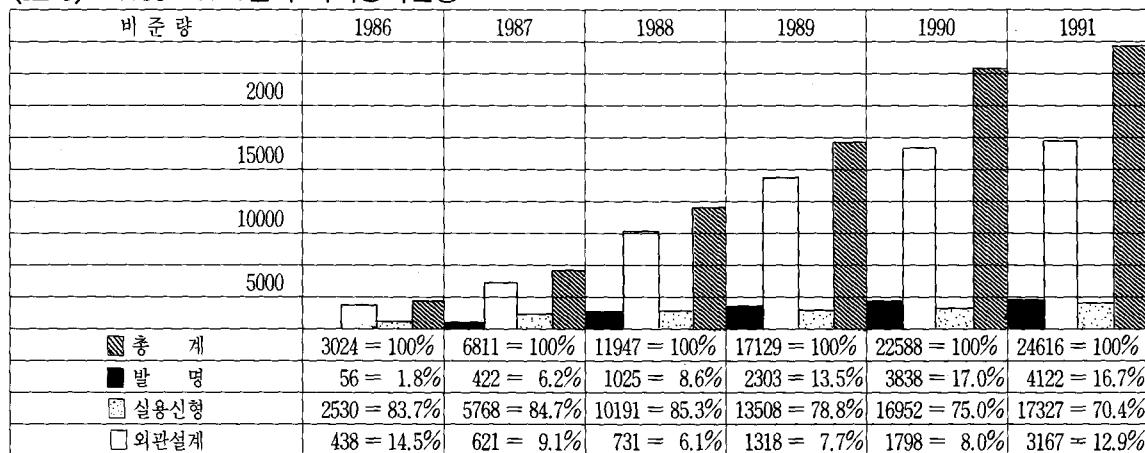
〈표 3〉 1991년 특허출원 10대 국가

국별급 지구	신청서								합계		발명		·실용신형		외관설계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1600	1800	총누계	1991	총누계	1991	총누계	1991	총누계	1991
미 국										10693	1620	10126	1547	105	9	462	64
일 본										8483	956	7596	878	283	14	60	64
연 방 덕 국										3204	355	3062	341	22	4	120	10
한 항										1253	291	244	35	351	63	658	193
법 국										1685	217	1606	211	2	0	77	6
영 국										1564	207	1461	195	6	1	97	11
서 사										1302	177	1160	136	18	5	124	36
화 란										1495	157	1428	134	8	0	59	23
남 조 선										316	137	256	102	43	22	17	13
의 대 리										655	81	605	78	13	0	37	3

〈표 4〉 1991년 특허출원의 IPC 분류에 의한 기술동향

A 인류생활필수 B 작업 운수 C 화학 약금 D 방직 조폐 E 고정건축물 F 기계공정 G 물리 H 전학	A-H 총계 Total	A	B	C	D	E	F	G	H
○ 발 명	10204 =100%	1837 =18.0%	1773 =17.4%	2836 =27.8%	312 =3.1%	397 =3.9%	909 =8.9%	1101 =10.8%	1039 =10.2%
○ 실용신형	32194 =100%	8757 =27.2%	7702 =23.9%	559 =1.7%	568 =1.8%	2781 =8.6%	5564 =17.3%	3257 =10.1%	3006 =9.3%
당년누계	42398 =100%	10594 =25.0%	9475 =22.3%	3395 =8.0%	880 =2.1%	3178 =7.5%	6473 =15.3%	4358 =10.3%	4045 =9.5%
총 누 계	187937 =100%	43040 =22.9%	40771 =21.7%	19395 =10.3%	4049 =2.2%	12180 =6.5%	26946 =14.3%	22740 =12.1%	18816 =100%

〈표 5〉 1986~1991년의 특허등록현황



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등록현황

1991년에 24,616건의 특허가 중국특허청에 등록이 되었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서 9%가 증가한 숫자이다. 이중 발명특허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출원공개 : 9,233 심사청구 : 7,406
- 심사착수 : 7,140 심사완결 : 6,543
- 특허사정 : 4,202(64%), 거절사정 : 335,

이의신청 : 9(0.2%)

참고로 1986년부터 1991년까지 특허의 등록현황은 다음 〈표 5〉와 같다.

참고로 1991년도 실용신안에 대해서 살펴보면 총 27,682건을 예비 심사를 한후 무심사 등록하였는 바, 이중에서 17,327건이 등록되고, 210건의 이의신청, 391건은 거절사정된 바 있다. 또한 1991년 상표의 출원 및 등록현황은 다음 〈표 6과〉과 같다.

여기에서 외국인의 출원을 국가별로 살펴보

면, 홍콩 1,693(29%), 미국 1,595건(27%), 일본 956건(16%), 영국 297건, 독일 198건, 프랑스 197건, 한국 168건(3%), 스위스 61건, 캐나다 55건, 기타 665건(11%)로 한국은 7위다. 한국은 다출원국가의 하나로써 상표의 중국진출이 많이 향상되고 있음을 알 수 있겠다.

〈표 6〉 1991년 상표출원 및 등록현황

종류 구분	출 원	등록
국내인	59,124 (87.5%)	34,501 (86%)
외국인	5,885 (12.5%)	3,523 (14%)
계	67,604	40,330

4. 자료 및 전산화

특허청의 핵심업무는 심사와 심판이고, 이를 지원하는 것은 바로 자료와 전산화라고 말할 수 있다. 중국 특허청은 WIPO 및 EPO 등의 국제기관의 도움을 받은 과정에서 그 기관들의 advice에 충실히므로써 자료의 현대화와 전산화가 계획대로 성공할 수 있었다고 본다. 중국은 금년중에 PCT에 가입함과 동시에 PCT 국제조사 기관이 됨으로써 이제 선진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있게 되었다. 즉 중국은 특허분야에서 최신식 현대무기로 무장한 군대처럼 WIPO 등의 국제무대에서 발언권을 높이면서 미국 등의 선진국을 추격하는 국가가 된 것이다.

1) 전산화 현황

현재 중국 특허청이 보유하고 있는 전산관련 시설들은 1989년 6월 신청사 완공후 모두 한 곳에 집중 배치되었다. 주 컴퓨터는 독일과 일본에서 도입되었고, 소프트웨어는 일본과 EPO의 전문가들의 기술지원으로 개발되었다.

–주 Computer System : SIMENS 7536과 7570(독일)

정보통신망 : HICOM Communication System

–추가도입된 Computer(1992) : HITAC HIM 220D(일본)

–광디스크 System 도입 : 중국특허문헌입력(매년 11,000건)

1992년에는 전국적인 특허전산망을 구축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2) 중국 특허청이 개발한 Main Software로는 특허하여 절차 관리시스템(The Management System of Patent Approval Procedures : CPMS)이 있는데 이 CPMS는 서지적사항, 법률관계 Data 및 수수료 관리에 관한 Software이고 특허문헌의 검색에 관련한 Software로는 CIPIS(중국 특허 정보써치 시스템)가 따로 개발되어 있다. 1990년에는 특허심판에 관련된 10개의 Sub-system을 완성한 바 있고, 특허출원의 공개 공보 및 공고공보도 컴퓨터에 입력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WPI 써치 DATA BASE는 1963~1989년까지 500만건의 특허문헌 Data를 Computer에 수록 하였다(1981~1989년까지의 235만건의 특허명세서 초록도 포함).

특히 주목할만한 것은 1990년부터 전리국 심사 4부에서 Computer On-line에 의한 선 행기술 써치를 시작함으로써 수준높은 심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1990년에는 32,098건의 중국 특허문헌에 인덱스가 부여되고 37,430건의 특허문헌이 Keywords로 입력되었으며, 약 2만건의 중국 특허 명세가 광디스크로 입력 완료된 바 있다. 최근에는 중국 특허의 영문초록이 134개의 자기 테이프로 제작되어서 7개국과 WIPO로 송부되었다. 그리고 CPRS(중국 특허 마이크로컴퓨터 써치시스템)을 이용하여 1985. 4. 1이후 특허청에 특허 및 등록 된 발명과 실용에 대해서 서지적 데이터(1991년

118,842건)를 입력하고 있다.

3) 중국은 1990년까지 특히 전산화를 완료하였고, 5개의 성에서 시범적으로 지역 통신네트워크(LAN)를 구성하여 시험중에 있으며 미국, EPO 및 동일과는 인공위성을 통한 특허정보를 교환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특허청의 전산화가 선진국으로 될 수 있었던 것은 1985년부터 EPO DG1의 전산 전문가들이 중국에 파견되어 기술 지원을 해주었기에 체계적으로 전산화를 추진할 수 있었다고 한다.

4) 자료의 현대화

중국이 1993. 9. 월 경에 PCT 국제조사 기관으로 지정될 수 있게 된 것은 특허청이 문을 연후 꾸준히 미국,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등 15개국과 EPO, PCT에서 발행한 특허명세서를 수집하여 1991년 말 현재 1,460만 건을 보관하고 있고 중국 특허 명세서 135,000건도 완벽하게 관리하면서 기타 20개국의 특허자료도 수집한 때문이다. 이러한 과정에서 특허관리 문헌의 상호 교환을 목적으로 14개 나라 및 EPO, PCT와도 쌍무협정을 체결한 것도 중요한 정책이었다. 이제 중국은 거대한 대륙에 전국적인 특허정보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서 정보 서비스센타 설립을 하고, 특허정보 대민 서비스 업무를 확장하여 발명의 진흥과 기술개발을 적극적으로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다.

5. 특허권의 보호정책

중국의 특허제도가 우리의 제도와 특별히다른 부분을 특허권의 보호정책이다.

중국 특허법은 특허권의 보호 및 발명자와 특허권자간의 이익보호에 관해서 특허법에 강력하게 규정하고, 정책적인 측면에서는 “특허관리기관”을 설치하여 전국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국내외적인 신뢰를 확보하게 되었다. 중국에서 특허권자는 자신의 특허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두 가지 루트를 통해서 침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하나는 특히 관리기관을 통한 행정적인 처리이고 또 하나는 인민법원을 통한 사법적 처리이다.

1) 특허관리기관의 역할

이 기관은 중앙 및 지방의 특허활동을 총괄하여 특허권을 관리하는 행정기구이다. 중국 특허법에 각 성, 자치구, 직할시, 개방도시, 경제특구 및 국무원의 각 부, 각 위원회에 각각 특허관리국 또는 특허관리처를 설치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1991년 현재 54개의 특허관리관이 설치되었다. 이 기관은 수속과 절차가 간단하고 처리가 신속하며 비용이 저렴하다는 특징이 있다고 한다.

가. 주임무

- 각종 특허분쟁의 조정 및 처리(특허침해 사건처리)

- 침해행위 금지 및 손해배상 명령의 권한, 강제집행 청구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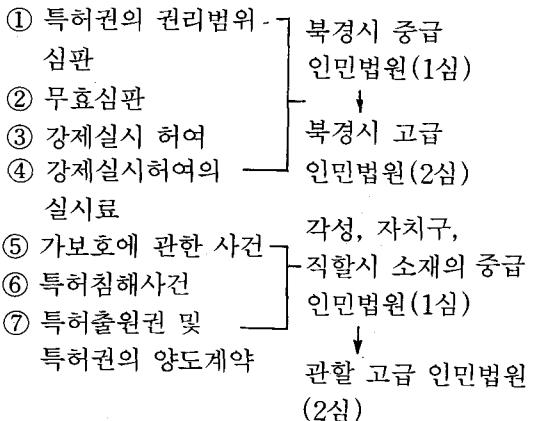
- 특허출원, 실시허여 계약 및 직무발명 등 의 분쟁처리

- 특허 사용료에 관한 분쟁, 발명자와 특허권자간의 이해관계 조정

나. 직원

- 법률지식을 갖는 기술계 직원들로 구성되고, 필요시 전문가의 협력을 구함.

- 인민법원의 관할



3) 침해자에 대한 제재조치

특허권자의 승인없이 특허를 실시하는 것을 침해행위로 간주하는 것은 우리제도와 같다. 침해사실을 인지한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자는 특허관리 기관에 사건의 처리를 요청할 수도 있고 직접 인민법원에 제소할 수도 있다. 상기 행정관청이 내린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당사자는 그 결정에 대한 통지를 접수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강제집행을 청구할 수 있다. 제법특허에 관련한 특허분쟁이 야기된 경우 동일한 제품을 생산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자기 제품생산에 사용된 제조방법을 입증하여야 한다. 특허침해사건의 소송시효는 특허권자나 이해관계인이 침해사실을 인지하였거나 인지했어야 한 날로부터 2년간이다. 1991년 통계에 의하면 특허관리기관에서 총 1,233건의 특허분쟁 사건을 접수하였으며 그중 약 70%에 해당하는 862건을 만족스럽게 해결하였다고 한다.

4) 특허침해에 대한 감시망(Network)

중국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감시는 매우 조직적이고 거국적인 감시 시스템을 갖고 있다. 이 감시망은 정부가 관여하지 않고 순수한 민간단체인 특허대리인 기구(전국에 474개 있음)에 의해서 운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일본 등 외국의 특허권자가 특허대리부의 감시대상 지역에 대한 감시를 위임하는 위임장과 수수료를 대리인 사무실에 제출하면, 대리인 특허권 감시를 위임받아 전국적인 감시망을 통해서 실행하고, 침해행위를 발견 즉시 특허권자에게 알려주게 된다(이 경우 침해발견자는 그 대가로 일화 수천엔을 받는다고 한다). 또한 특허관리기관 또는 인민법원에서 그 침해행위가 사실로 판단된 경우에는 침해행위 발견자에게 일정한 금액(일화로 일만엔 정도)를 보상금으로 지불하도록 되어있다. 이렇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감시방법은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국내외 특허권자에게 잘 인식되어 있

어서 중국의 특허침해 감시망은 외국인 특허권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는데 손색이 없는 제도라 생각된다. <계속>

<27p에서 계속>

로 약 1km 거리에 1,000여개의 전기용품을 취급하는 상점이 있다 한다. 품목으로는 가전제품, 오디오, PC, 전기부속품 등이다. 엔고 현상으로 구매자들은 많지 않은 것 같았다. 전업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 한다.

4. 아시카사점

절을 가는 입구에는 토속상품과 간이음식점이 많았다. 절의 규모에 비해서 불상크기는 매우 작았다. 마당에는 거대한 향로가 있는데 향을 태운 연기가 많이 나온다. 관람객들은 연기로 머리를 감거나 옷속으로 넣는다. 이런 방법으로 몸과 마음을 청결케 한 후 부처님께 소원을 빌면 성취할 수 있다고 한다. <계속>

<32p에서 계속>

승기 위해 1시간 남짓을 기다려야 했다. 그 사이 우리는 샌프란시스코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되었다.

미국에서 해마다 실시되고 있는 ‘인기 도시 베스트 10’의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는 도시가 샌프란시스코란다.

서해 연안의 햇살이 잘 비치는 이 도시는 미국의 도시로서는 드물게 서정적인 색채를 띠고 있었다.

항구 도시로서 많은 민족과 문화를 흡수해 온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모든 분위기가 서로 중복되어 있었고 세계에서 제일 큰 차이나타운이 도시 중앙에 펼쳐져 있었으며, 또 우리 한국인의 거리도 있다 고 한다.

미국인의 도시이면서도 친해지기 쉬운 도시라고도 한다. <계속>